

# 메디칼뷰티연구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 1조 (명칭 및 목적)** 이 규정은 비만치유 및 메디칼 뷰티 상담기법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을 실현하고 대학의 경쟁력확보 및 국민건강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유 및 관리 방안을 연구 하기 위한 호서대학교 메디칼뷰티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 (위치)** 연구소는 서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내에 둔다.

**제 3조 (사업내용)**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

1. 비만치유 및 메디칼뷰티 상담 과정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
2. 비만의 발병과 치료 기전에 관한 연구
3. 비만 예방 및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 보조제 개발
4. 산학협력을 통한 비만치유 건강 보조제 제품화
5. 국내·외 기관과의 공동 학술활동
6. 학술 세미나 개최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## 제 2 장 조직 및 구성

**제 4조 (조직)** 연구소는 전국규모의 비만과 메디칼 뷰티 상담과 정부의 대규모 사업의 유치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- ① 정책 개발 및 교육훈련 분야 : 비만치유사와 메디칼 뷰티 상담사를 배출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교육 및 훈련 영역에 대한 연구 개발
- ② 대외협력분야 : 교내외 관련 연구소와 협력 방안 연구, 국내 저명 교수 및 연구자와 협력공동 연구, 관련기업의 회원 화 및 회원 간 상호협력·산학협력 방안 모색
- ③ 행정지원분야 : 홍보·회계 및 행정 업무 담당

**제 5조 (구성)** ① 연구소 임원구성은 소장 및 각분과에 분과 위원장 1인을 둔다.

- ② 소장 : 1명
- ③ 분과위원장 : 2명
- ④ 간사 및 감사 : 각 1명
- ⑤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
- ⑥ 연구소내의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 ‘연구원 임용규정’에 준용한다. 단,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(2015.09.01.)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 (구성 및 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맡고, 부소

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기타 위원은 간사, 감사, 각 분과장 등 임원과 연구원, 교내외 전문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**제 7조 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
2. 임원 및 연구원 선출
3. 예산 및 결산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## 제 4 장 재 정

**제 8조 (재정)**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비만치유사 · 메디칼 뷰티 상담사 과정 수입금
2. 정부 및 외부 산업체 수탁과제 연구지원금
3. 각종 지원금 및 기업 보조금
4. 기타 연구소 사업 수익금

**제 9조 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 제 5 장 폐 소

**제10조 (폐소)**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)

## 제 6 장 보 고

**제11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## 제 7 장 보 칙

**제12조 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**제13조 (운영세칙)**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개정 2015.09.01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